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계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2004-8963/0991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 상성KODEX자동차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증권형[주식] 집합투자기구
- 다. 보관 · 관리기간: 2010.06.26 - 2011.06.25
- 라.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
-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에이치엠씨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SK증권,
삼성증권, 케이비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2.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 일자	변경 사유	주요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2010.08.26	제2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
제38조 (투자신탁보수)	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제 41 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이하 “분배금 지급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 1. ~ 3. 생략 ③ ~ ⑤ 생략	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제41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단, 회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을 제외하며, 이하 “분배금 지급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 1. ~ 3. 생략 ③ ~ ⑤ 생략	
제41조 (추적오차율)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을 과도한 금전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오차를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오차를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경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1월, 4월, 7월, 10월 2. ~ 4. 생략 ② ~ ③ 생략 ④	1. 지급기준일: 1월, 4월, 7월, 10월 2. ~ 4. 생략 2. ~ ③ 생략 ④	1. 지급기준일: 1월, 4월, 7월, 10월 2. ~ 4. 생략 2. ~ ③ 생략 ④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이익 계산되는 이익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배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이익 계산되는 이익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배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이익 계산되는 이익
제48조 (수익자 대회공고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업자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결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업자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결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8.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② 생략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을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집합투자업자의 사명변경 및 형태개정 반영)
부칙 신설		
2010. 11. 01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용제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 3. 생략 4.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 6.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1. ~ 3. 생략 4.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 6. 생략
제38조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투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자산총액의 보수율에 투자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투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자산총액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

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신설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3.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0 3.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보수율: 연 1,000분의 0.3 ⑤ 생략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3.4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3.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보수율: 연 1,000분의 0.4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투자신탁 보수 변경)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변경일자	변경 사유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³⁾	협회등록번호
2011.03.02	말소	사봉하	- 2001년 2월 Columbia Univ. 통계학 석사 - 2001년 2월 삼성생명 주식운용 - 2002년 4월 삼성투신 운용 LT 주식 1팀 운용역 - 2003년 1월 ~ 現 삼성투신운용 ETF 운용팀	2109000726
2011.03.02	신규	김남기	- 2003년 7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03년 7월 삼성자산운용 신탁회계팀 - 2004년 11월 채권2팀 - 2006년 7월 채권1팀 - 2007년 11월 ~ 現 ETF 운용팀	2109001159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사항없음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사항없음

6. 회계감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전				변경일	변경후			
회계감사인명	계약기간	감사보수	계약방법		회계감사인명	계약기간	감사보수	계약방법
안진회계법인	1년	220 만원	서면계약	-	-	-	-	-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부합함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공정함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적정함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